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재심의)

No. 2021-					
소관부서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처	2021		-	-	주의(2명)
제 목 : 공용차 부적정 운영 감사(재심의)					
1. 현황 1) 처분 경위 2021.06.25. 공용차 부적정 운영 감사 및 처분 요구(훈계 2명) 2021.07.16.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2021.08.26. 감사재심의회 개최 2) 문제 행위 ○○○○본부(○○○○처)에 배치된 ○○○ ○○원은 2020.4.월부터 2021.5월까지 ○○○ ○○○장의 출퇴근 운전을 지원하였고, ○○○ ○○○○○○○장은 본인 공용차량(전용차량) 출퇴근 운전을 장기간 맡겨왔다. 2. 원 처분의 요지 1) 관계규정 및 법령(판단 기준) 가. 공사 공무직 관리세칙 제4조 제2항(별표4)은 공용차량 운전원의 직무를 ‘소속본부의 임직원 출장 시 운전 등 업무지원’ 및 ‘소속본부 공용차량 유지점검(점검 및 수리, 주유, 세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직원 출퇴근 지원 불가”가 명시되어 있다. 나.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항(임직원의 기본윤리)에는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9조(공·구분) 제1항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위법부당 내용 ○○○은 규정상 금지된 특정 개인의 출퇴근 지원을 장기간 하였다. 막상 본인 직무인 일반 직원의 출장업무지원은 충분히 못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복무질서를 문란 시켰다. ○○○은 직원 전체의 출장지원업무를 맡은 공용차운전원에게 규정상 금지된 자신의 출퇴근 운전지원을 장기간 맡겨왔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직원들이 출장업무에 활용하기 어렵게 하는 등 공·사의 명확한 구분과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하였다.					

【 처분 내용 】

- ▶ ○○○○본부 ○○원 ○○○ - 훈계
- ▶ ○○○○본부 ○○장 ○○○ - 훈계

3. 재심의 이유와 판단

가. 이유

○○○과 ○○○은, 최초 감사처분에 대해 ‘○○○○처 출근은 ○○○ ○○원의 자원에 의한 카풀 동승(○○○○○○○장에게 사전의사 타진 후 실행)이며, 나머지 출장 동승은 임직원 출장 시 운전 등 업무지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동으로 이의 신청을 하였다.

나. 판단

출근 동승을 ‘카풀’로 주장한 것은 사내 카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 상호 동의와 합의에 의함이 인정되므로, 근태규정을 지켰을 경우 소명이 된 것으로 재판단 한다. 그 밖에 ○○○ 외 다른 사무실로 출근할 때의 운전 지원은 운행내역이 출장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내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계’보다는 ‘주의’를 주어 교육과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공용차 부적정 운영 감사 처분을 요구한 사안은 훈계보다는 ‘주의’를 주어 교육과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공사 『직원 훈계 등에 관한 세칙』 제6조(처분사유) 제1항에 따라 ○○원 ○○○과 ○○장 ○○○에게 각각 “주의” 처분을 요구합니다.

[관련자]

- ▶ ○○○○본부 ○○원 ○○○ - 주의
- ▶ ○○○○본부 ○○장 ○○○ - 주의